

#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COA, COA-RA, COB-RA, IJA, JHE-RA  
 책임 부서: Division of School Leadership and Improvement; Di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

## 학업 및 행동 지원을 위한 의뢰 절차 Referrals for Academic and Behavioral Supports

### I. 목적

학생이 학업 또는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보일 때, 교사와 기타 학교 기반 직원이 학생을 지원 자원에 의뢰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 II. 정의

- A. *MCPS 웰빙 전문가(MCPS well-being professionals)*: 본 규정의 목적상,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SDE)로부터 정식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MCPS가 지정한 교육 및 전문 학습 요건을 완료하여 학교 심리학자, 학교 카운슬러, 학교 기반 다중언어 학습자 카운슬러(school-based Emergent Multilingual Learner counselors-SBEC), 학교 사회복지사, 비학교 기반 다중언어 학습자 치료 상담사(Emergent Multilingual Learner therapeutic counselors-ETC)로 활동할 자격을 갖춘 직원을 의미합니다. MCPS 웰빙 전문가는 학생의 행동/적응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의 행동에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지 또는 지원 자원 의뢰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전문가입니다.
- B. *협력 제공자(Partner Provider)*란 MCPS와 서면 계약 또는 양해각서(written contract or Memorandum-MOU)를 체결한 지역사회 사회·정서적 또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이 계약은 Di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DSSS)의 요청에 따라 법무국에서 작성하며, 협력 관계의 역할과 책임, 의뢰 절차, 안전 계획 수립, 의사결정 규칙을 명시합니다. 또한 MCPS에 적용되는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FERPA)과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의료정보 보호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에 따라 기밀 유지 및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 용어: 본 규정에 언급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관리 팀(Educational Management Team-EMT)* 학생의 부모/보호자와 MCPS 교육자로 구성되며, 학업 또는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우려 사항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2. *학생 웰빙 팀(Student Well-being Teams-SWBTs)*은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여러 학생 또는 학교 공동체와 관련된 학교 내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3. *행동 위협 평가 팀(Behavior Threat Assessment Teams-BTAT)*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가하는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청 및 학교 수준에서 설치됩니다. 구성원 및 구체적인 책임은 MCPS 규정 COA-RA, *행동 위협 평가(Behavior Threat Assessmen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팀과 504 조항팀(Section 504 Teams)*은 장애가 의심되거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또는 504 조에 따른 편의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유아부터 21 세까지의 학생을 위해 연방정부의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Education Act-IDEA), Child Find, *1973 년 재활법 504 조항(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Section 504)* 및 *2008 년 미국 장애인법 개정안(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ADAAA)*에 수립된 절차를 따릅니다. IEP 팀과 504 조 팀은 장애 아동을 위한 IEP 또는 504 계획을 수립, 검토 또는 수정할 책임이 있는 부모/보호자 및 기타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 III. 역할과 책임

A. 교사 및 기타 학교 직원의 역할과 책임

1. 교사는 학교에서의 경험을 논의하고 학생의 행동을 부모/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개입(치료 등)을 직접 권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사가 관련 상황이 정신 건강 또는 사회, 정서적 건강상의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사는 학생을 학교 관리자(학교장/교감 등)나 적절한 팀에 의뢰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의뢰 과정은 MCPS 웰빙 전문가가 부모/보호자와 논의합니다.

2. 학생이 학업 또는 행동 기대치를 충족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보일 경우, 교사와 기타 학교 직원은 해당 우려 사항을 평가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잠재적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과 훈련을 갖춘 적절한 팀에 학생을 의뢰해야 합니다.
3. 자살 징후나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협과 같은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교사와 기타 학교 직원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먼저 EMT 팀 또는 SWTB 과 상담해야 합니다.
4. 행동의 강도나 빈도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사와 기타 직원은 관리자나 응급 서비스의 지원을 구하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 a) 학생이 자살 징후나 관념을 보이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교사나 기타 학교 직원은 즉시 학교 관리자와 MCPS 웰빙 전문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들은 규정 COA-RA, *행동 위협 평가 팀(Behavior Threat Assessment Teams)*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 a) 1991년 10월, Maryland 항소법원은 모든 학교 직원이 "아동 또는 청소년 학생의 자살 의도를 인지했을 때,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직원들은 학생이 위협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살 위협에 대해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 직원은 즉시 학교 관리자, 상담사 또는 학교 심리학자와 협의하고 MCPS 서식 335-54, 자살 위험 보고 양식(*Suicide Risk Reporting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B. 관리자(교장/교감 등)의 역할과 책임

학교 관리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학생이 자살 징후나 관념을 보이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2. 자살 위험 보고 절차, 규정 COB-RA, *사건 보고(Incident Reporting)*, 규정 COA-RA, *행동 위협 평가(Behavior Threat Assessment)* 및 법 집행 기관과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사건을 보고합니다.

3. 부모/보호자, MCPS 웰빙 제공자 및 관련 팀과 상담합니다.
4. IDEA 및 ADA에 명시된 장애 학생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연방법을 준수합니다.
5. 회의가 적절하게 예약되고 필요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EP 및 504 조항 절차를 감독합니다.

C. EMT/SWBT/504/IEP 팀의 역할과 책임

1. EMT/SWBT 에 의뢰하기 전이라도 학생의 행동이 장애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자나 교사는 504 팀 또는 IEP 팀에 IEP/Child Find 의뢰를 해야 합니다. 해당 팀은 연방법 및 MCPS 규정 MCPS Regulation ACG-RB,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 관련 장애인 대상 합리적인 편의 제공 및 수정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Modification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ith Regard to Employment, Services, Programs, and Activities*)에 명시된 절차를 적절히 준수해야 합니다.
  - a) 504 팀 의뢰는 학생의 행동이 하나 이상의 주요 일상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장애 조건에서 기인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의뢰를 합니다. 주요 일상 활동의 예로는 시각, 청각, 섭식, 수면, 보행, 학습, 독서, 사고, 의사소통, 집중력 등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b) IEP 팀 의뢰는 학생의 행동이 장애에서 기인하며, 그것이 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의심되는 경우 의뢰해야 합니다.
2. EMT/SWBT 는 교사, 부모/보호자 등의 의뢰를 검토하여 문제 해결 및 개입 계획(intervention plan)이 적절한지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a)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행동을 정의
  - b) 행동의 원인과 직접 연결된 증거 기반의 개입 계획을 수립 및 실행
  - c) 계획의 일관된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개입의 효과를 평가
  - d) 부모/보호자 연락 및 기록 보관 절차를 준수

3. 개입 계획을 실행한 후에도 학생의 행동이 성취도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학교 팀은 학생의 장애를 의심하고 504 조항 또는 IDEA/Child Find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a) 학생이 IEP 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될 경우, IEP 팀은 개별화된 개입을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도록 학생을 학교 EMT/SWBT 로 다시 보냅니다. IEP 팀은 학생이 하나 이상의 주요 일상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장애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504 조(Section 504) 팀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 b) "만약 학생이 504 계획 대상에 부적격하다고 판정을 받을 경우, 504 조 팀은 해당 학생을 학교의 EMT/SWBT(교육 관리 팀/학생 웰빙 팀)로 의뢰하여 개별화된 개입 조치를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도록 해야 합니다.
4. EMT 또는 SWBT 의 지시에 따라, MCPS 웰빙 전문가는 행동 관찰, 학생 면담, 직접 상담 등 적절한 기법을 사용하여 학생 행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5. MCPS 웰빙 전문가와 학교 관리자는 Montgomery 카운티 위기센터 (Crisis Center) 및/또는 기타 Montgomery 카운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에게 지역사회 정신 건강 의뢰처 목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 신뢰하는 의료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해당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D. 학부모/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회의 참석

1. 학부모/보호자/양육자는 지원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도록 MCPS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보호자가 학교가 해당 MCPS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와 계속 소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양식 336-32, *기밀 정보 공개/교환 승인(Authorization for Release/Exchan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에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하여 학교 및 MCPS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 MCPS 웰빙 전문가에 의한 상담 동의

1. MCPS 웰빙 전문가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동의는 MCPS 서식 339-1, *개인 상담 동의서(Consent for Individual Counseling)* 및/또는 MCPS 서식 339-2, *집단 상담 동의(Consent for Group Counseling)*를 통해 학부모/보호자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2. 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담에 직접 동의할 수 있습니다:
  - a) Maryland 주법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성숙하고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2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으로부터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에 대한 상담, 진단 및 치료를 받는 데 있어 성인과 동일한 동의 권한을 갖습니다.
  - b) Maryland 주법에 따라 정신 및 정서적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MCPS 웰빙 전문가는, 학생이 상담 동의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Maryland 주법에 따라, IEP의 관련 서비스로서 상담을 받는 학생은 동의서에 서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이 졸업하거나, 21 세가 되어 특수 교육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독립하거나,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대리 부모 절차가 시행될 때까지 부모로서의 권리를 유지합니다.
4. 협력 기관(Partner Providers)과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 MCPS 웰빙 전문가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Health-General Article, §20-102 and §20-104.

**규정 변경사:**

새 규정 1982년 10월, 1987년 7월 21일 개정, 2007년 10월 25일 개정, 2009년 8월 13일 개정, 2025년 11월 24일 개정.